

## 「중소 수출입기업 활력지원 프로그램」 주요내용

(배경) 고물가·고금리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경제 회복 지연으로 자금 경색을 겪는 우리 기업의 어려움 가중  
 (목표) 경영 위기에 처한 우리 기업에 세정지원 실시로 자금유동성 확보를 통한 수출활력 제고 및 대외 경쟁력 회복

### 1 납부기한 연장·분할납부

- [목적] 외국물품 수입 시 납부해야 할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 연장(분납허용)으로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지원
- [대상] 세정지원 대상 기업으로 제외요건 미해당 업체

구분	제외요건(관세법 §10, §107, 담보제도 고시 §3)	
업체	납기 연장(분납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최근 2년간 관세법칙(통고처분 포함) 발생 기업</li> <li>• 최근 2년간 관세 체납실적 있는 기업(발생 30일내 납부시 제외)</li> <li>• 최근 2년간 수입실적이 없는 기업</li> </ul>
	담보 생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「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 고시」 제3조①항 해당 기업</li> </ul>
	물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「관세법」 시행규칙 제8조 (사전세액심사 대상) 제5호 해당 물품</li> </ul>

- [내용] 납부기한 연장(분납 허용) 및 담보제공 생략
  - ① 수입통관 시 납부세액과 고액(5천만원 이상)의 세액정정·과태료(과징금) 납부액에 대해 납기연장(분할납부) 허용

구분	납부기한 연장	분할납부
• 수입통관 시 납부세액	최대 1년	최대 6회
• 사후 세액정정 납부세액(보정, 수정신고, 경정)	최대 1년	최대 6회
• 과태료, 과징금 납부액	최대 1년	최대 6회(과징금 3회)

- ② 납기연장(분할납부) 업체에 대해 담보제공 생략
- [절차] 납기연장·분할납부 신청\* 및 사후관리(취소 등)는 「관세법시행령」 제2조③항부터 제⑦항에 따라 처리
  - \* 별지 납기연장(분할납부)신청서에 납부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

### 2 관세조사 유예·연기

- [목적] 중소기업에 대해 관세조사를 일시적으로 유예·연기하여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
- [대상] 중소기업 활력지원 프로그램 대상 기업(참고1, ①-④수출 중소기업 제외) 중 '23년 수입실적 1억불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제외요건에 미해당 업체

구분	제외요건(「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」 제19조)
업체	① 최근 4년간 관세법칙(통고처분 포함) 발생 기업
	② 최근 2년간 관세 체납실적 있는 기업(발생 30일 내 납부시 제외)
	③ 고용노동부 체불사업자 명단에 등록된 업체
	④ 탈세혐의가 명백한 기업
	⑤ 일제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
물품	⑥ 수입신고 물품이 「관세법」 시행규칙 제8조(사전세액심사 대상) 제5호에 해당하는 물품

- [내용]
  - (조사유예) 지원대상 선정기업에 대해 '24. 7. 1.~'25. 6. 30. 1년 간 관세조사 유예
  - (조사연기·중지) 관세조사 통지 또는 진행 중인 업체 중 “⑥ 피해 기업”으로 접수·확인된 경우 관세조사 착수 연기 또는 일정기간 관세조사 중지
- [절차] 본청(기업심사과)에서 관세조사 유예 등 검토 후 결정

조사 유예	본청에서 관세조사 유예 대상 선정
조사연기(중지)	피해기업 확인(세관) → 확인 명단 보고(세관·본청) → 관세조사 연기·중지 결정(본청)

### 3 수출환급

□ [목 적] 인력·정보부족 등으로 수출환급을 활용하지 못하는 수출 중소기업 등에 환급정보 및 절차 간소화 서비스 제공

□ [대 상]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간이정액환급 대상 업체

구 분	요건(관세환급특례법 §13, 「관세 환급사무처리 고시」 제31조)
업 체	①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1항에 해당 중소기업 ②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 환급실적 8억 원 이하 ③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1일~환급신청일 환급실적 8억 원 이하 ※ ②,③ 환급실적 산정시 원상태환급실적은 포함하지 않음
물 품	① 국내 제조·수출물품 ②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물품

□ [내 용] 신생 수출 중소기업, 수출실적은 있으나 환급실적은 없는 업체를 중심으로 未환급업체를 발굴하고 환급신청 방법 등 안내

○ (환급 안내) 수출신고 시 최근 2년간 환급 여부를 조회하여, 수출업체(또는 관세사)에게 환급정보를 실시간 자동 안내

○ (절차 간소화) 별도 환급신청 절차없이 수출신고서에 자동환급 표시하면 환급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환급금 심사 후 지급

○ (품목 확대) 소요량 계산없이 간단한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\* 확대('23년, 신규 10개)

\* ('20 ) 4,496개 → ('21) 4,513개 → ('22) 4,520개 → ('23) 4,530개

□ [절 차] 「환급특례법」 및 「수출용원재료 관세등 환급사무처리 관한 고시」에 따라 업무 처리

### 4 체납자 회생

#### ① 강제징수 유예·체납정보제공 유예

□ [목 적] 회생 가능성이 있는 체납자에게 무역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회생과 재기의 기회 부여\*

\* 現 5백만원 이상 체납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금융거래가 제한됨으로써 정상적인 경제활동 불능

□ [대 상]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 강제징수 유예를 받은 업체(개인 포함)

□ [내 용]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허용, 재산 압류·매각 등 강제징수 유예 및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사실 통보 유예

#### ② 일시 체납자 분할납부취소 유예

□ [목 적] 과실 또는 착오로 발생한 일시적 체납업체에 대하여 자금부담 완화를 통한 기업의 경영활동 지원

□ [내 용] 분할납부 중인 세액의 체납발생시\* 담보를 제공 하는 경우 잔여금액 분할 납부 유지(체납금액은 납부)

\* (기존) 분할납부 금액에 대하여 15일 이내 일괄납부

5

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

□ [목적]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정산신고 시까지 납부유예

\* 수입 시 부가가치세 납부 후 분기별로 세무서에서 환급(매입세액 공제) 받고 있어 부가가치세 환급 시까지 자금 부담 완화

□ [대상 및 요건]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91조의2

- ① 중소·중견 제조기업
- ②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\* [중소] 수출액 비중 30%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 원 이상 [중견] 수출액 비중 30% 이상  
\* `20년 대비 요건을 완화(50%→30%, 100억→50억 원)하여 대상기업 확대
- ③ 최근 2년간 관세·국세 체납(15일 이내 체납세액 납부 시 제외) 없음  
\* 단기체납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 완화
- ④ 최근 3년간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실 없음
- ⑤ 최근 3년간 계속 사업 경영
- ⑥ 최근 2년간 납부유예 취소 사실 없음

□ [절차]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건 확인을 받아 세관장에게 신청

- ①요건 충족 확인요청(업체→세무서장) ⇨ ②확인서 발급(세무서장→업체)  
⇨ ③납부유예 적용신청(업체→세관장) ⇨ ④승인여부\* 결정(1개월 내, 세관장)  
\* 관세법 위반(3년), 체납사실(2년) 여부 확인

참고1

관세청 세정지원 중소기업 기준

상 세 내 역		확인 기관
수출 기업	① 수출 우수 기업 • AEO 기업이거나 수출용원재료 관세환급실적 있는 기업 중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30%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원 이상	관세청
	② '수출의 탑' 수상 기업	무역협회
	③ 전문무역상사 • 「대외무역법」 제8조의2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인프라*를 보유한 기업 * ①3년 평균 수출 1백만 달러 이상 + 대항수출비중 20% 이상, ②대규모 점포 국외 운영 + 전년 매출 500억원 이상, ③전자상거래 운영 + 매출액 100만불 이상 등	산업부
	④ 수출 중소기업 •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해당 중소기업으로 직·간접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	관세청
정책 지원 기업	① 혁신기업 • 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5조, 제15조3 의거 기술혁신형(이노비즈), 경영혁신형(메인비즈)지정 기업	중기부
	② 탄소중립 추진 전략기업(RE100) •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해당 제조기업	산업부
	③ 뿌리기술 전문기업 • 「산업통상자원부 고시」 2018-122호 의거 핵심뿌리 기술 보유 기업	산업부
	④ 우수재활용(GR) 인증기업 •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1 및 「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」 제2조4호	산업부
	⑤ 사업재편 계획 승인 기업 • 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(기업활력법)」 승인	산업부
일자리 유지 및 창출	① 일자리 창출 기업 • 수입규모별 일자리창출비율* 이상 채용 기업 * (관세청) '22년 수입액 기준 : 1천만불미만 1%이상, 5천만불 이하 2%이상, 1억불 이하 3%이상 * (국세청) 상시근로자 수(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/ 해당연도의 개월수)를 전년대비 증가시킬 예정 기업	관세청 국세청
	② 일자리 유지 기업 • 고용유지 및 채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	관세청
	③ 일자리 으뜸 선정 기업 • 「고용노동부」 선정 일자리 창출 으뜸기업	고용노동부
	④ 근무혁신 우수기업 • 「고용노동부」 선정 근무혁신 우수기업	고용노동부

상 세 내 역		확인 기관	
위 기 발 생 기 업	⑤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•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 의거 인증 기업	국가보훈처	
	④ 스타트업	① 새싹 중소기업 •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의2에 의거 확인된 기업	중기부
		② '23년 신설 중소기업 • '23년 신설 중소기업(분할·합병·인수 등은 제외)	관세청
	⑤ 성실인증	①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(AEO, 수출입부문)	관세청
		② 관세청·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기업	관세청, 국세청
⑥ 피해 기업	① 러·우 전쟁, 물류 대란, 태풍 등 긴급 자연재난 피해 중소기업	관세청	
⑦ 사회적 기업	① 장애인표준사업장, 장애인고용률 3%이상 기업 • 최근2년 누적 수입실적 1억불이하 + 「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해당 기업	관세청, 고용노동부	
⑧ 위기 산업· 재난지역 기업	①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소재 기업	산업부	
	② 고용위기지역 지정 소재 기업	고용노동부	
	③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정 기업	고용노동부	
	④ 기타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	행안부	